「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4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농촌지원국장 남 병 국

2. 제안이유

가. 옥성자연휴양림은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이용객 안전관리 및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나. 안정적이고 공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제26조(재계약)

다)「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제13조(위탁 관리·운영)

2) 필요성 : 옥성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이용객 안전 확보,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위탁 사무 내용 : 옥성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환불

라. 위탁시설

1) 소재지 : 옥성면 주아리 산145-1번지 일원

2) 규모 : 구역면적 153ha

3) 주요 시설

- 야영시설 : 야영데크(38)
- 편익시설 : 방문자안내소, 야외화장실(5)
- 체육시설 : 데크로드(190m), 산책로(1), 등산로(3), 족구장(1)
- 숙박시설

시설명	내 용
숲속의집(16동) 10동-'07.11월 개관 6동 -'10. 7월 개관	풍경의집(26.44㎡), 전망의집(46.27㎡), 풀향기집(26.44㎡) 우정의집(46.27㎡), 행복의집(39.66㎡), 소망의집(26.44㎡) 산마루집(39.66㎡), 믿음의집(46.27㎡), 솔향기집(39.66㎡) 사랑의집(46.27㎡) - 장애인 편의시설 햇살집(19㎡), 별빛집(27㎡), 달빛집(27㎡) 단풍집(19㎡), 향기원의 집(19㎡), 물향기의 집(19㎡)
산림문화휴양관 (1동/9실) '14. 8월 개관	숲마루(80㎡), 꽃마루(26㎡), 참마루(17㎡), 솔마루(45㎡) 해마루(45㎡), 빛마루(26㎡), 온마루(17㎡), 별마루(45㎡) 달마루(45㎡)

- 기타시설 : 네트모험시설(′24. 5월 개장), 주차장(6개소, 165대), 물놀이장, 샤워장, 세탁실, 원두막(4), 목교(5), 취사장(3), 음수대(1), 숲속교실

4) 위치도



마.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해당연도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 타	비고
합 계	**7,526,699**	**3,550,755**	**2,954,187**	**1,021,757**	
2027년	1,492,699	700,755	590,187	201,757	
2028년	1,498,000	705,000	591,000	202,000	
2029년	1,505,000	710,000	591,000	204,000	
2030년	1,512,000	715,000	591,000	206,000	
2031년	1,519,000	720,000	591,000	208,000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옥성자연휴양림 공공위탁 선정위원회 심의('26. 9. 21.)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구미도시공사)

※ 부서의견

가. 구미도시공사는 2009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옥성자연휴양림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기존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구미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여 옥성자연휴양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제26조(재계약)

다)「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제13조(위탁 관리·운영)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6. 9. 21.)

라.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 자체감사결과

○ 옥성자연휴양림 성과평가 및 자체감사 시행('26. 9. 3.)

- 성과평가 '우수' 및 자체감사 결과 '적정'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옥성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그간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규모 다중이용 휴양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바,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최근 성과평가(우수) 및 자체감사(적정) 결과에서는 효율적인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매년 투입되는 예산(연간 약 15억원 규모) 대비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서에서는 노후화된 숲속의집 등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산림휴양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 노후된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의 위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